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415번
-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 외 14명
- 발 의 일 : 2020년 4월 3일
- 회 부 일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2020. 4. 13. ~ 2020. 4. 2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독도교육 관련 사업 추진,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책무)	-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
제3조(계획의 수립)	-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 시장은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5조(사업추진)	- 시장은 독도교육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제8조(표창)	-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제9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제1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독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독도 관련 법령〉

법령(규칙)명	시행일	소관부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 3. 18.	환경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2011. 8. 4.	국가보훈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14. 7. 1.	해양수산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2017. 2. 15.	해양수산부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2017. 10. 25.	국무조정실

- 독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3개의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북도 내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소관 조례임.

〈독도 관련 조례〉

조례(규칙)명	시행일	소관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1.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2017.10.19.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2005.7. 4.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4. 4. 21.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2013. 3. 1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009. 6. 1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009. 6. 1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30.	경상북도울릉군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2014. 10. 1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 관리 조례	2019. 5. 2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8. 24.	경상북도 울릉군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17. 7. 7.	대전광역시교육청

- 본 제정안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독도교육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통일적인 사업 수행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독도에 대한 교육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은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나 생략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독도교육 등의 사무를 서울시에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서울시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과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는 의견 및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독도교육 등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률 자문 결과〉

자문내용	자문 1	자문 2	자문 3
독도교육 등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해양수산부)에서 통일적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서울시 수행은 위법 소지 ※ 독도교육 및 홍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사업,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독도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시행 불가 	-국가사무에 해당	-서울시 사무에 해당

- 또한,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독도교육 교재 보급 및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둘째, 초, 중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서울시민은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음에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독도교육을 특화하는 것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이미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독도의 역사성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임시회(제291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을 의결한바 있음.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기능)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하 "대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 공고화 사업에 관한 사항

1의2. 독도 관련 중요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협의를 관한 사항

2. 독도 및 주변수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

3의2. 독도에 대한 대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도 영토관리와 관련하여 대책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셋째, 서울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

- 동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독도 교육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무로 분류된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통해서도 동 교육의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 명시적인 개별 조례 제정이 아닌 동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5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3조) 및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자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제2항)으로 “추진목표 및 추진 방향, 자원조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수립한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장기적인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사업으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독도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 다만, 안 제3조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5조의 사업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는 안 제3조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시 자원과 여건에 맞게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 오히려 집행하기 쉬운 사업만 수행하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조문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서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사무를 대행해서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에도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전부를 민간에 위탁¹⁾하고 있는바,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민간위탁 현황>

□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 운영법인

- 수탁기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대표: 곽노현)
- 수탁기간: 2019. 9. 11.~2022. 9. 10.(협약일로부터 3년)
- 민간위탁금: 6억 7천 5백만원
- 인력구성: 4명(센터장 1명, 직원 3명)

구분 (급여기준 급)	계	센터장 (6급)	직원 (7급)	직원 (8급)	직원 (9급)
정원	4	1	1	1	1
현원	4	1	1	1	1

○ 담당업무

담당	주요업무
센터장	운영·사업 총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과정 운영,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시민참여	시민 사회참여활동 지원, 공론장 운영
운영지원	인사, 예산집행, 계약, 시설관리

○ 2020년 사업계획

정책사업	목적 및 추진 목표	예산 (천원)	비율 (%)
단위사업			
총 계		412,176	100
시민 공론 촉진 및 역량강화		196,548	47.7
1. 시민 대화모임 형성	- 사회문제 대화모임 형성(대화모임 1,000회 지원) - 시민 대화모임 플랫폼 제작(1,500만원)	77,622	18.8
2. 시민 의제 공론 활성화	- 의제 공론을 통한 논의 촉진 및 정책제안 활성화 · 작은 공론장 2회 운영	16,710	4.1
3.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 통반장, 주민자치회원 등 시민성 함양 및 역량강화 · 교육과정 8회 운영(2차시, 총 8시간)	34,220	8.3
4. 시민 네트워크 역량강화	- 시민·활동가관련단체 간 교류 확대, 협력 강화 · 우수사례 운영(5건), 특강(2회), 워크숍(4회), 포럼(4회)	67,996	16.5
시민 교육·실천활동 지원		152,752	37.1
5.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단체 27개 선정 지원	99,484	24.1
6. 동아리 사회참여활동 지원	- 시민 의제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 지원 · 동아리 50개 선정 지원	53,268	12.9

- 독도교육만을 별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집행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더불어, 독도에 대한 시민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위탁할 만한 기관과 단체가 민간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3) 표창(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시민 표창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454건이(5.2%p)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표창의 영예성과 엄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민 표창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62,876	15.3
7. 서울 민주주의 박람회	- 사례공유 등, 민주주의 인식 확대 및 의식 향상 · 서울 민주주의 박람회 참여	10,426	2.5
8. 홍보	- 센터 인지도 향상 및 시민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홍보물·콘텐츠 제작 및 배포	37,450	9.1
9. 웹사이트 제작	- 시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웹 접근성 강화 · 웹사이트, 시민참여 플랫폼 제작 및 유지관리	15,000	3.6

〈최근 5개년도 시민표창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총계	시민표창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상장
2015년	8,595(↑28.2%)	5,273	143	3,179
2016년	8,822(↑2.6%)	5,685	75	3,062
2017년	8,873(↑0.6%)	5,882	183	3,040
2018년	8,785(↓1.1%)	5,512	228	3,045
2019년	9,049(↑2.9%)	5,369	173	3,507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